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

1. 지원규모 : 900억 원(시중은행 협력자금) / [하반기 90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억 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
경영 안정 자금	일반기업	900	3억 원 이내	개별금리	1.5% (우대기업2.0% ~ 2.5%)
	수출기업		5억 원 이내	상동	상동
	기술신용평가기업		5억 원 이내	상동	상동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업체

※ 3. 지원한도 “다” 항목으로 신청하는 기업(기술/신용 평가 기업)은 평가 제외

3. 지원한도

가. 일반기업 : 3억 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5억 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3억 원		3.5억 원		4억 원		4.5억 원		5억 원

다.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4

4.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2년 ※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용자 기간은 기업과 취급은행 간 협의

나. 용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 2.5%(별첨3)

※ 우대기업 : (별첨3)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1회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3억원 한도)

라. 용자실행 : 자금 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 * 관내 지점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5. 지원 제외업체

가. 용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척’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용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카.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 『대전비즈』 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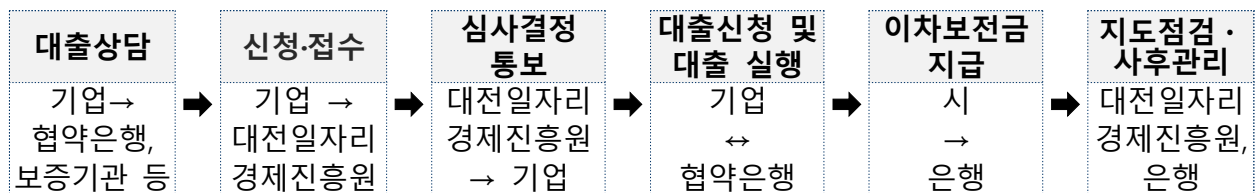
다.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3 참조]

라. 용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별표2]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 기술신용평가 의뢰 기업은 평가 결과회신에 따라 추천서발급 소요기간이 지연될수 있음

마. 지원절차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신청 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 기타 부당 사용
- ▶ 용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라.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
- 마.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별첨 1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33402, 33409 제외	전업을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②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01), 화물운송 주선업(52992) 법인택시 운송업(49231),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 취급업(5294) ④ 정보 서비스업(63) ⑤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⑥ 전문 디자인업(732) ⑦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 운영업(4530)	전업을 50% 이상
건설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종/ 여행사업(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여행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별첨 2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참고자료
1. 고용창출 (20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0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30인 미만	17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인 미만	14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11	
2. 수출증대(수출액) (15점)	연간매출액의 50% 이상	15	수출실적증명원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연간매출액의 30% 이상 ~ 50% 미만	13	
	연간매출액의 30% 미만	10	
	국내매출	5	
3. 사업영위기간 (10점)	10년이상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년이상 ~ 10년 미만	7	
	7년미만	5	
4. 생산성 향상 (연간매출액) (15점)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상	15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ㄹ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13	
	ㄹ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10	
	ㄹ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7	
	ㄹ 5억 원 미만	5	
5. 재무상태 (자본총계/자산총계) (15점)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15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ㄹ 40% 이상 ~ 50% 미만	10	
	ㄹ 30% 이상 ~ 40% 미만	7	
	ㄹ 30% 미만	5	
6. 사업장(공장) 형태 (10점)	자가 사업장	10	건축물대장(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임대 사업장	5	
7. 사업장(공장)입지 (5점)	계획입지 (공단 및 산업단지, 보육센터, 벤처타운 입주)	5	입주계약서
	개별입지	3	
8.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기업 (10점)	신기술, 신제품 지정기업,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10	해당 인증서 및 특허증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3년 이내 3건 이상)	7	
	좋은일터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인증기업	5	
	실용신안보유기업	3	
9.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	10(-10)	
총 점		11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가. 가점 대상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또는 퇴거통보서 첨부)(5점)
 - ⑤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공장등록증 첨부)(5점)
 - 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기업확인서 첨부)(2점)
 - ⑦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 (입주 확인서 첨부)(3점)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당산업 선정 확인서 첨부)(5점)
 - ⑨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3년) (표창장 첨부)(5점)
 - 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첨부)(3점)
 - ⑪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 (해당인증서 첨부)(3점)
 - ⑫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C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 (해당인증서 첨부)(3점)
 - ⑬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해당인증서 첨부)(5점)
 - ⑭ 대전광역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 (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 ⑮ 지역인재 채용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인서 첨부)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 ⑯ 대전시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 (3점)
 - ⑰ 본 자금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고 신규로 신청한 기업 (5점)
 - ⑱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 대상

-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5점)
-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미만(-10점)
- ③ 경영안정자금 활용 기업 (5회이상 -5점, 3회~4회 -4점, 2회 -3점)
- ④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별첨 3 이차보전(2.0% ~ 2.5%)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 우대기업 이차보전을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기업	제출서류
우대기업 (2.5%)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D-유니콘기업	지정 인증서 사본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타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모범명문기업, 일자리에뜸기업	관련 확인자료
우대기업 (2.0%)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서 사본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뿌리산업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인증서) 사본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대전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3년 이내), 서구평촌 산단 입주기업	관련 확인자료 *창업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실증참여기업 - 실증확인서

○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분	제출서류	비고(해당업종)
공통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 24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대상: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정부24→민원신청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업종별 증빙서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일반화물·전세버스·택시운송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1부 (평가기관 서식 사용)	기술신용평가 신청기업	
평가항목 제출서류	6. 사업장 형태(자가사업장, 임대사업장)	건축물대장(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7. 사업장(공장)입지	입주계약서
	8.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기업 등, 9. 가점	해당 인증서 및 특허증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회사소개 :

- 생산품목 :

- 자금소요시기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구분	소요 금액
재 료 비	000,000백만원
인 건 비	000,000백만원
일반관리비	000,000백만원
기 타	000,000백만원
계	0백만원

○ 용자금 상환계획

○ 기 타

※ 작성요령 : 용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2025년 경영안정자금 평가표

* 신청기업 접수 작성 및 서명 후 제출

기업명 :

(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신청기업 입력	배점참고자료
1. 고용창출 (20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20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30인 미만	17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인 미만	14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11		
2. 수출증대(수출액) (15점)	연간매출액의 50% 이상	15		수출실적증명 원 또는 수출실적증명 서
	연간매출액의 30% 이상 ~ 50% 미만	13		
	연간매출액의 30% 미만	10		
	국내매출	5		
3. 사업영위기간 (10점)	10년이상	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년이상 ~ 10년 미만	7		
	7년미만	5		
4. 생산성 향상 (연간매출액) (15점)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상	15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ㄴ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13		
	ㄴ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10		
	ㄴ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7		
	ㄴ 5억 원 미만	5		
5. 재무상태 (자본총계/자산총계) (15점)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15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ㄴ 40% 이상 ~ 50% 미만	10		
	ㄴ 30% 이상 ~ 40% 미만	7		
	ㄴ 30% 미만	5		
6. 사업장(공장) 형태 (10점)	자가 사업장	10		건축물대장(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임대 사업장	5		
7. 사업장(공장)입지 (5점)	계획입지 (공단 및 산업단지, 보육센터, 벤처타운 입주)	5		입주계약서
	개별입지	3		
8.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기업 (10점)	신기술, 신제품 지정기업,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10		해당 인증서 및 특허증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3년 이내 3건 이상)	7		
	좋은일터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인증기업	5		
	실용신안보유기업	3		
9.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 · 감점부여 대상 참조	10(-10)		가점대상 증빙자료
총 점		110	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사·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 대상기업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기업),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사업자(*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본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

3. 처리절차

- 자금신청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진흥원)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 자금추천(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수시접수)

5. 기술평가 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www.kodit.co.kr) → 자료실(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 → 기술평가 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380-3081, 3021, 3000, Fax 380-3093
-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610-2200, Fax 610-2222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 1588-6565